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책임, 사업주체(안 제2조 ~ 제4조)
- 이용의 대상,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보건복지부 「2025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

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다만,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 또한, ‘돌봄 특례’를 적용하여 일반아동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함.
-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도 현재 일반아동과 돌봄아동 모두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가능한 바, 현행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 조문은 본 조례의 골자인 ‘아동지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넘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아동지역센터 목적(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적합한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함.
- 안 제4조(사업주체)는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신고 요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인용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음.
- 안 제5조(이용의 대상)는 영등포구 아동지역센터 운영 현황 및 보건복지부 「2025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기준에 따라,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 또한, 동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우선돌봄아동 대상을 열거함.
 - 한편, 2025년 5월 말 기준,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총 현원 536명 중 우선돌봄아동 412명(77%)로 파악됨.

□ 검토 결과

- 상기 개정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등포구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중심의 차별적 이용 인식 해소 및 현행 운영 실태를 제도적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3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전승관, 이성수, 김지연
차인영, 정선희(5인)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책임, 사업주체(안 제2조 ~ 제4조)

나. 이용의 대상,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제11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으로,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을 “증진에 노력”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개인 등 아동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11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지역아동센터</u>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u>지역아동센터</u> ”----- ----- ----- -----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u>	제3조(<u>구청장의 책무</u>) ----- ----- -- <u>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u> --- <u>증진에 노력</u> ---.
제4조(사업주체) <u>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률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u>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개인 등 아동 복지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례회는 <u>년1회</u> 개최한다. ③ ~ ⑤ (생략)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연 1회</u> -----. ③ ~ ⑤ (현행과 같음)
--	--